

신청서		(*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○표를 하십시오.)	
사 건 번 호	20 가 (차)	(단독 20 . . . 선고, 기타)
원고(채권자)	(주민등록번호 등	-	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
피고(채무자)	(주민등록번호 등	-	
제3 채무자			
1. 집행문 부여 신청			
위 당사자 간 사건의(판결, 결정, 명령, 화해조서, 인낙조서, 조정조서)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2. 송달증명원			
위 사건의(판결, 결정, 명령, 화해조서, 인낙조서, 조정조서) 정본이 20 . . .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3. 확정증명원			
위 사건의 (판결, 결정, 명령,)이 20 . . .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위 (1항, 2항, 3항) 신청인		20 . . .	원고(채권자)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
위 (송달, 확정) 사실을 증명합니다.			
20 . . .		법원	법원사무관(주사) 서명 또는 날인

- [유의 사항] 1. 사건번호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 하십시오.
2. 위 양식 사항 중 (단독 . . .선고, 기타)란에는 담당재판부와 판결을 선고받은 일자(혹은 지급 명령을 고지받은 일자, 화해·조정 등의 일자)를 기재합니다.
3. 당사자를 표시하는 ‘원고(채권자)’, ‘피고(채무자)’항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 ‘채권자’, ‘채무자’란에 ○표를 하고, 그 외 소액 및 단독,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‘원고’, ‘피고’란에 ○표를 하여야 합니다.
4. 위 양식 사항 중 1 내지 3 신청의 ‘(판결 …… 조정조서)’ 등의 난과 그 하단의 ‘(1항, 2항, 3항), ’(송달, 확정)’란에는 해당 사항에 각 ○표를 하여야 합니다.